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7. 3. 22.(수)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3.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①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 및 제14조1(서면보고)에 의거, 의결사항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보고사항 '가' 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

② 의결사항

가. (재)극동방송에 대한 외국자본 출연 승인에 관한 건 (2017-15(서)-095)

- (재)극동방송이 미국 극동방송으로부터 2017년도에 미화 60만 달러를 출연 받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고삼석 위원 의견 : 지상파방송을 사유화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기 바람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7-15(서)-096)

- 미래창조과학부의 안좌유선방송사 등 6개사 중계유선방송사의 재허가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 방송심의 재심에 관한 건 - (주)한국경제티브이 <장외주식 4989> (2017-15(서)-097)

- (주)한국경제티브이의 2016년 3월 21일, 3월 22일, 4월 4일, 4월 5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8일, 4월 19일, 4월 25일, 4월 26일, 5월 2일, 5월 3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6일, 5월 17일 자(20:00~20:30) <장외주식 4989>에 대한 '경고' 제재조치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처분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라. 방송심의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 (주)홈앤쇼핑 <천호식품> (2017-15(서)-098)

-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지방송'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송법」 100조제4항을 위반한 (주)홈앤쇼핑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 >

피심의인	관계 법령	과태료 금액
(주)홈앤쇼핑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27호, 제100조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250만원

마. 방송광고 법규위반 행정처분사업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건 (2017-15(서)-099)

- 제2016-72차 위원회(2016.12.22.)에서 의결한 (주)문화방송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부과 >

피심의인	위반 법규	과태료 금액
(주)문화방송	「방송법」 제73조제2항,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4항 제3호가목	500만원

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보궐위원 위촉에 관한 건 (2017-15(서)-100)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이미라 교수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17.3.22.~'18.5.30.)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2017-15(서)-101)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최윤정 부교수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17.3.22.~'18.5.30.)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아.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7-15(서)-102)

-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변경 관련 방송분야 금지행위 업무가 방송정책국에서 방송 기반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③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연장 및 기타사항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접수함